

입시관리위원회규정

제정 : 1995.03.01
개정 : 1998.03.01
개정 : 1999.03.01
개정 : 2001.03.01
개정 : 2002.03.01
개정 : 2003.03.01
개정 : 2004.04.22
개정 : 2005.04.01
개정 : 2006.03.01
개정 : 2011.03.01
개정 : 2014.07.01
개정 : 2018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입시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, 입학학생취업처장, 사무처장으로 보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3.01.>

제3조(위원장) 위원장은 입학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. <개정 2014.07.01.>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입학전형의 계획, 방법, 절차,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.

제5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<개정 2014.07.01.>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03.01.>

부 칙
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04년 4월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